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부합하는 등록사항을 유지 하여야 하나, 우리시 관내 전기공사업체인 (주)초고압이앤씨가 등록사항을 미달(자본금효력상실)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업체의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업체가 위치하여 있지 않고 대표주의 주소지도 명확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화 성 시 장

1. 제 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9. 10. ~ 2015. 09. 24.
3. 대상업체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제주-00060	(주)초고압이앤씨	윤우현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26번길 15, 명성프라자 301호(반월동)

4. 공고사항

- 행정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사항 미달(자본금확인서 효력상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09.10. ~ 2015.09.24.(15일간)
- 제출처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지역경제과(☎031-369-1839)
- 제출방법 : 서면제출(방문 및 우편송달 등)
 - ※ 의견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6.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031-369-1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